

G1.32

1986

법과 인권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전라남도본부

G1.32

당면 목표

1. 인권사상의양양
2. 인권제도의개선
3. 인권침해의구제

말로하는 인권보다

실천하는 인권으로

머 리 말

현대사회에서는 법을 잘 알고 지킬 수 있는 사람만
이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명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회를 규율하는 법 또한 점점 어렵고 복잡하게 발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법률과 제도도 놀랄만큼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선진사회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법을 알고 이를 지키는 자세를 체질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도본부에서는 어렵고 복잡한 법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해 가는 한편 기본적인 생활법령을 모든 국민이 널리 익힐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 도민에게 배포하고, 무료 법률상담 등을 실시하여, 도민 여러분의 인권옹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도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요긴하게 알아 두어야 할 법률문제를 알기쉽게 풀어서 엮은 것이며, 뒷부분은 당연행에서 취급한 사건을 문답형식으로 편제하여 참고토록 하였으므로 모든 문제를 법에따라 해결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함께 평화와 발전을 기하도록 합시다.

1986. 11. .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전라남도본부
위원장 조희채

차 례

머 리 말	2
알아두면 편리한 여러가지 제도	5
○주택임대차보호제도	5
○소액심판제도	8
○법률구조제도	10
○배상명령제도	12
○공증제도	14
○국가배상제도	17
○산재보험제도	20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23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24
1. 계약전 유의사항	24
2. 계약시 유의사항	26
3. 대금 지급시 유의사항	27
금전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28
1. 거래는 명확히 하여야 한다	28
2. 상대방을 잘 확인하자	29
3. 돈을 빌려줄 때 유의할 점	29
4. 돈을 빌릴 때 유의할 점	31

5. 기타	32
교통사고의 법률대책	33
1. 교통사고 관계자가 유의할 사항	33
2.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해설	34
3. 자동차보험제도	35
4.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상식	38
호적제도에 관한 법률상식	43
1. 호적이라 함은	43
2. 호적사무 처리기관	43
3. 호주와 호주상속	43
4. 입적과 제적	44
5. 제적과 제적부	44
6. 신고	44
7. 호적관계의 몇 가지 법률상식	46
상담 내용	50

알아두면 편리한 여러가지 제도

주택임대차보호 제도

○ 주택임대차라 함은

집없는 사람들이 남의 집이나 방을 세들어 사는 제도인데, 세드는 사람을 임차인, 집주인을 임대인, 집세를 차임이라고 한다.

○ 주택임대차의 종류는

삭월세라고 하여 매달 세를 내는 것과, 전세라고 하여 다액의 보증금만 결고 사는 것이 있으며 절충형도 있다.

○ 임차인 보호의 필요성

원래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에 따라 성립되므로 집주인인 임대인은 집을 빌리려는 임차인 보다 강한 입장에 있어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수가 많았다.

나쁜 집주인은 계약기간을 짧게 정해놓고 차임(소위 임대료)를 올려주지 않으면 함부로 임차인을 쫓아내는 수도 있었으며, 보증금을 갚지 아니한 채 집을 팔고 달아나 버리면,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 임대

차 기간 전에 쫓겨나거나 보증금을 빼이는 일도 있었다. 이처럼 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고 이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만들어진 법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다.

○ 보호대상

주거용(살림살이 하는) 건물의 임차인과 주거겸 용 점포 또는 사무실의 임차인이 보호 대상이 된다 순수한 상가나 점포 또는 사무실의 임차인은 이 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 보호요건

임차인이 그 집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임차권이나 전세권 등기를 한 사람과 같은 보호를 받게 된다. 실제로 입주를 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한다.

○ 보호의 내용

- 설사 집주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은 종전의 임대인이 지는 의무를 그대로 부담하게 되므로 임차인은 새 집주인에게 계약기간 전에는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고 또 보증금도 받아낼 수 있다.
-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최하 1년이다. 1년 미만

의 계약기간을 정한 임대차 계약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으로 취급되므로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최소한 6개월 이내에는 임차인에게 집을 비우라는 요구(계약해지)를 할 수 없고, 그러한 요구를 받은 임차인은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집을 비우면 되므로 사실상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셈이다.

- 또 집주인은 계약 후 1년이내에는 보증금이나 집세를 올릴 수 없고, 설사 올리는 경우에도 약정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신고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함께 생활하던 배우자에게 권리, 의무가 승계되어 계약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다.

○ 다른 담보권과의 관계

- 세든 집에 이미 저당권 등의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먼저 설정된 저당권 등은 임차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항상 등기부부터 열람을 하여야 한다.
- 다만 200만원(서울 및 직할시에서는 300만원) 이하의 적은 보증금을 걸고 전세 입주한 경우에는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나 국세 및 지방세 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영세민을 특히 보호하고 있다.

소액심판(少額審判)제도

○ 제도의 취지

- 민사소송을 하려면 처음 소장을 써서 내는 것부터 끝날 때까지의 절차가 어려워 변호사나 사법서사의 도움 없이는 아무나 할 수 없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수가 많았으므로
- 200만원 이하의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여 경제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 이 제도이다.

○ 간편한 소송제기

- 법원 소액계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사항을 기입하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나마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 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가 있다.
-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하다.
- 소송에 드는 비용은 수입인지 (청구금액 $\times \frac{5}{1000} + 320$ 원) 와 송달료 (우표 3,120 원) 뿐이다.

○ 신속한 재판

-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 기일을 지정 (보통 14일 이내) 하여 알려주고,
-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첫 재판날 (변론기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재판에 불출석하면 즉시 불리한 결과가 닥친다.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가 두 번 불출석하면 소송은 끝난다.
-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순회재판도 하고 있다.

○ 소송대리의 특칙

- 보통 재판과 달리 변호사가 아니라도 원·피고의 처, 남편, 부모, 자식, 형제자매, 호주 등은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하여 소송을 할 수 있다. 이 때는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결정과 불복

- 재판장은 당사자간에 조정을 붙이거나 결정으로 재판을 끝내며 당사자가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내지 않으면 위

결정은 확정되어 당사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률구조(法律救助)제도

○ 법률구조 제도란

생활이 어려워 재판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처지의 국민을 위하여 필요한 소송비용을 대신 내주어 (후에 상환을 받음) 변호사를 선임, 소송을 하여 줌으로써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도록 돋고 있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이다.

○ 구조받을 수 있는 사람

- 농민
- 어민
- 월수입 40만원 이하의 근로자
- 6급 이하의 공무원
- 위관장교 이하의 군인
- 군사원호보상을 받는 사람
- 풍수해를 당한 이재민
- 정신·신체장애인 등

○ 구조받을 수 있는 경우

- 상해를 입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배상받지 못

한 경우

- 급료,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 기타 억울한 일을 당하여 법적 해결이 필요한 경우

○ 구조 신청장소

-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법률구조 담당검사실

○ 구조 신청방법

- 구두 또는 서면

○ 구비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구조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구조대상 제외사건

- 의뢰자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국가 또는 행정관청을 상대로 하는 경우
- 도박채권 등 구조가치가 없는 경우
- 상대방이 자력이 없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소송을 할 실익이 없는 경우 등

○ 법률상담

누구든지 어려운 법률문제가 생기면 각 검찰청 또는 지청의 법률구조실에 가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 상담대상도 제한이 없으므로 일상생활 특히 금전거래나 부동산 매매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하여 불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함이 좋다.

배상명령(賠償命令)제도

○ 배상명령 세도라 합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이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 상해를 당했을 때
-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

을 때,

-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 횡령이나 배임을 당했을 때,
- 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로 한정되어 있다.

○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 위에 정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고,
-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 배상명령의 신청범위는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 뿐이다. 그 이상 예컨대 위자료까지 신청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배상명령이 내려지면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 배상명령의 효력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문은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이 이유없다고 각하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배상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없고 또 인용된 금액 범위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면 된다.

공증(公證)제도

○ 공증의 의의

공증은 우리의 법률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작용으로, 공증인이 작성한 서류를 공정증서라 한다. 이를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갖가지 다툼을 미리 막거나 줄일 수 있어 그 이용가치가 자못 크다.

○ 공증담당기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및 임명된 공증인이 담당하고 있으며,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임명공증인이 없는 지역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직무대행을 임명받은 검사

가 담당한다.

○ 공증의 필요성

• 분쟁의 사전방지

계약시 공증인의 상담을 받음으로써 민사상의 분쟁을 사전방지할 수 있다.

• 강력한 증거력

공증한 서류는 위조의 염려가 거의 없으므로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 있어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

• 신속한 강제집행 가능

어음·수표나 금전소비대차 등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공증하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집행할 수 있다.

○ 공증의 종류

• 공정증서의 작성

어음·수표의 거래나 돈을 거래할 때 또는 매매 계약시의 공증인이 이를 공증하고 그 공정증서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한다.

• 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한다.

- 정관 인증

법인설립 당초의 정관의 진정성립을 공증인이 확인한다.

- 의사록 인증

법인등기 절차에 수반되는 의사록의 내용과 성립을 공증인이 확인한다.

- 확정일자의 암날

개인이 작성한 사서증서에 공증인이 일자인(日字印)을 암날한다.

○ 공증하면 편리한 경우

- 어음 · 수표의 거래를 할 때

- 매매계약, 금전소비대차, 임대차계약 등을 할 때

- 유언을 할 때

- 채권을 양도할 때

- 질권을 설정할 때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법인설립시 정관과 모든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해야 한다.

○ 공증촉탁에 필요한 문서등

- 본인이 촉탁할 때

- 인장

- 인감증명서나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법인이 촉탁인일 때에는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 대리인이 촉탁할 때

-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

- 위임장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장

국가배상(國家賠償)제도

○ 국가배상제도의 의의

국가배상제도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하여 나라에서 신속, 적정한 배상을 하여주는 제도이다.

○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차량 · 군용차량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공공시설물(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군작전훈련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공무원, 군인(군무원 포함)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 주한 미군인(군무원 포함)의 불법행위나 미군용 차량 등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배상신청 장소

- 각 지방검찰청의 지구배상심의회(12개)
- 육·해·공군 본부 및 사령부, 군단의 각 지구배상심의회(17개)

배상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 사건에 공통되는 구비서류
 - 신청서 1통(배상심의회에 소정양식이 있음)
 - 주민등록표 등본 1통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호적등본, 사망진단서(호적등본에 사망 사실이 기재된 경우 불필요), 월 실수입액 증명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치료중 사망한 경우) 각 1통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향후 치료비 추정서 포함), 월 실수입액 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 각 1통
- 건물, 차량, 선박 등 피해의 경우

-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등본, 수리비영수증 또는 그 내역명세서, 월 실수입액 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 각 1통
- 토지 피해의 경우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임야)대장등본, 복구비영수증 또는 그 내역명세서 각 1통
- 기타 피해의 경우
 - 손해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 1통

○ 배상심의회의 배상신청에 대한 결정

- 배상결정 - 국가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결정
- 배상신청기각 결정 - 국가배상 책임이 없음을 인정하는 결정

○ 배상금 지급 청구서 제출기관

- 각 지방검찰청
- 각 지구심의회 해당 군부대
- 각 특별회계기관(철도청, 전매청 등)

○ 배상심의회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 지구 배상심의회 결정에 대하여는 법무부나 국방부에 설치된 본부 배상심의회 또는 특별배상심의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하다.

- 법원에 소송제기도 가능하다.

○ 국가배상제도의 장점

• 간편한 절차

신청서와 간단한 구비서류 제출만으로 배상해 준다. (소송제기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음)

• 충분한 배상

소송제기하여 승소했을 때와 같은 실손해액을 받는다.

• 기회 보장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국가배상은 먼저 배상신청을 하여 그 결정대로 배상금을 타거나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 배상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산재보험 (產災保險) 제도

- 노동부 제공 -

○ 산재보험의 의의

근로자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상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한 경우에 의료보장(치료)과 소득보장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 누가 가입하나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과 제조업 중 화학, 석탄, 석유, 고무,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업체와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위생서비스업, 운수보관 및 통신업, 임업 중 별목업,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업이나 중개업, 건설업(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의 건설공사) 등이고 당해 사업의 사업주는 사업개시 7일이내에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60일 이내에 보험료를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 어떤 혜택을 받는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재해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보상을 하여 준다.

•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4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할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하여 준다.

• 휴업급여

치료기간중 일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한다.

- 상병보상연금

2년이상 요양(치료)을 계속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자로서 폐질등급 3급 이상인 자에게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으로 평균임금의 67 - 8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장기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게 한다.

- 장해급여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때에는 그 정도(1급 - 14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게되며, 근로자의 선택에 의하여 장해보상일시금(1급 - 14급) 또는 장해보상연금(1급 - 7급)을 지급한다.

-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족은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000일분) 또는 유족보상연금(평균임금의 52 - 67 %) 중 선택하여 지급하게 된다.

-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장례를 행한 때에는 장례를 행한 자에게 그 장례비로 평균임금의 90일분을 지급한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주가 어떤 제재를 받는가

- 산재보험은 일반보험처럼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일정요건(일반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이상, 광업 등 위험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이상,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 4,000만원이상)에 해당하면 설립 신고와는 관계없이 그 날로부터 보험관계는 산재보험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성립된다.

- 따라서 사업주는 자기 사업장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요건이 되면 반드시 그날로부터 7일이내에 관한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성립신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는 재해근로자에게 노동부에서 지급한 보상금의 50 %를 급여징수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되는가

- 소속 사업장이 위 법률이 정하는 보험관계 성립요건에 해당하면 보험가입자가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근로자는 노동부에서 보상금 전

액을 받을 수 있다.

- 소속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10인 미만으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보상치 않으면 노동부 지방사무소(근로 감독과)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 처리하여 출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토지나 집 등을 사고 파는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무주택자가 근근히 모은 돈으로 집을 장만 하려다가 사기를 당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1. 계약전 유의사항

가.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해당지번 지적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가옥대장, 임야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용도지역 확인원 등을 떼어보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과 등기부,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과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알아보아야 하고 매도하려는

자가 실지 소유자 인가의 여부도 신중하게 알아보아야 한다. 복덕방이 소개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다.

나.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어서는 안된다. 근자에 복사기술이 발달되어 정당한 등본이라도 이를 고쳐서 다시 복사하는 사례가 많아 원본과 다른 복사본이 많이 나돌고 있기 때문에 등본이 있으면 반드시 관계공무원의 인증(원본과 같다는 확인)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근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열람하여 확인하거나 이를 떼어 보아야 한다.

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권리증도 자세히 살펴보고 원본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단시일에 권리자가 수명씩 바뀌는 등 권리변동 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일단 의심을 하고 사지 말아야 한다.

마. 여러가지 담보 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사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또 매수직전에 비로소 보존등기가 되거나 기타 상속등기나 회복등기가 된 것은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

바. 소송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물건은 매수 할 때에는 패소판결을 받은 자를 찾아가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 재산세 납세자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아 보아야 하며, 또 건축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여부, 개발제한구역 여부 등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아. 해당지역이 고시지역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신고 구역으로 지정한 토지거래 신고 대상지역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계약시 유의사항

가.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명백히 쓰고 애매한 문구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복덕방에 인쇄되어 있는 계약서 용지를 사용하려면 이를 면밀히 읽어보고 검토할 것이며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나. 계약시에는 매도인 추 대리인과 계약하지 말고 거래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고, 복덕방의 소개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매도자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입회인을 두는 것이 좋다.

다. 복덕방의 말만 믿고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 매도인측의 말만 믿고 이를 그대로 매수인에게 전하는 수도 있을 수 있고,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과장된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싫가

에 비하여 현저히 싸거나 별 이해관계도 없는 자들이 사라고 권유하는 부동산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매수만 하면 금방 돈을 번다고 하고서도 자기들이 사지 않고 남보고 사라고 권유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라. 신문지상의 광고만을 믿고 경솔하게 계약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광고에는 좋고 유리한 것만 나오지 부동산 자체의 결함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결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가옥대장 등도 확인하여 등기부와 일치 여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마. 토지거래신고 대상지역의 토지거래시에는 토지거래계약신고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바. 일생일대의 중대한 생활터전을 마련하려는 경우 일수록 사전확인을 치밀히 해야 하고, 변호사나 사법서사 기타 법을 잘 아는 사람 혹은 법률상담실을 찾아가 상의해 본 후 계약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3. 대금 지급시 유의사항

가. 중도금이나 잔대금을 지급할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주고 받는 등 대금지급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등기부는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시마다 그 직

-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중도금을 받고도 이중으로 매도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 다. 잔금 지급시 사법서사 사무실에 가서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자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류 등 권리이전서류를 받아 이전등기 수속을 마치도록 한다.
- 라. 이전등기 수속을 마친 후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이전등기가 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

금전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1. 거래는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금전거래는 불화의 근원이란 말이 있다. 가까운 친구나 친척사이가 불명확한 돈 거래로 인하여 사람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거래 관계는 명확해야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 상세한 문서를 작성하여 교환하는 것이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계약시에는 계약서를, 돈을 주고 받을 적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즉석에서 확인하는 관행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문화인의 자랑이다.

2. 상대방을 잘 확인하자

- 모르는 사람끼리 돈 거래가 이루어질 때 상대방의 직업, 주소, 성명 등을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상대방의 재력과 신용은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은행에 거래 상황을 조회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지능적인 사기범은 이를 이용하기도 한다.
-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보호자(부모 또는 남편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손해를 볼 경우가 생긴다.
- 법인 즉 회사 등과 거래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회사를 대표하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단지 그 회사의 임직원과 개인적으로 돈 거래하는 형식의 계약서를 만들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3. 돈을 빌려줄 때 유의할 점

-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재력과 신용을 확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상대방의 신용과 재력이 의심스러울 때는 회수확보를 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 담보에는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다. 인적담보는 제3자로 하여금 보증이나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것인데 제3자의 재력등도 확인하여야 한다.
- 물적담보로는 흔히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 소유권이전 등기를 받는 방법 등이 있고 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받아두는 경우도 있다.
- 흔히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을 만나 승락을 얻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서면통지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이고 단지 채무자의 전세 계약서를 받아 놓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가정주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그 돈이 자녀들의 학비나 식비 등 일상 가사비용으로 사용된다면 그 남편에게도 변제책임이 있으나 일상 가사와 관계 없이 주부가 계를 한다든지 사치나 유흥비로 쓴다든지 하는 경우는 남편이 별도로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단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변제책임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형식으로 돈을 빌려줄 적에는 약속어음의 배서가 연속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고 배서인이나 발행인이 아니면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채무자의 배서를 받아야 한다.

- 수표는 부도를 내는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백지수표(주로 발행일자)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가 많는데 발행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제시를 하거나 기재한 발행일자보다 10일이 넘은 후에 제시하여 부도가 난 경우는 발행인의 형사책임이 면제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 도박이나 강도와 같은 범죄에 제공될 자금인줄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경우는 상대방이 임의로 갚아주면 좋으나 갚지 않으면 법률상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나쁜일에는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한다.

4. 돈을 빌릴 때 유의할 점

-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다급하기 때문에 이자나 담보 관계 등에 있어서 채권자(전주)의 요구에 따라 가혹한 조건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 원금이나 이자를 갚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원리금을 완전히 변제한 경우는 미리 교부해 주었던 차용증서나 어음, 수표 등을 회수하지 않으면 나쁜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하여야 할 위험성이 크다.
- 악덕 사채업자 중에는 비싼 담보물을 협값에 취득할 목적으로 변제기일에 일부러 만나주지 않거나 변제기일을 연기해 주겠다고 속여 안심시킨 후에 변제기를 넘겨 담보물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로 이럴 때에는 지체없이 공탁절차를 밟아야 한다

- 이자는 약정이 없는 한 갚을 필요가 없으나 변제 기가 경과된 경우에는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연 2할 5푼을 초과하는 높은 이자의 약정은 무효이므로 초과분을 물지 않아도 된다.

5. 기타

-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도 상속되므로 채권자는 그 상속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이 채무를 면하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의 한정 승인을 하여야 한다.
- 채무자가 약속대로 변제를 하지 아니한다면 채권자는 결국 법절차에 따라 재판과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변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경우에 앞서 설명한대로 충분한 변제확보 방법을 강구해 놓지 못한 채권자는 손해를 물 가능성성이 많다.
- 그리고 실제로 불성실한 채무자가 재산도피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경우에도 증거가 부족하여 채무자의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때가 대부분이다.
-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합법적 수단을 포기하고 속칭 해결사를 동원한다든지 하는 폭력 수단으로 돈을 받아내려고 기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더 큰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의 법률대책

1. 교통사고 관계자가 유의할 사항

- 교통사고란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모든 교통수단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주로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 구호의무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차량의 운전수나 승무원은 자기에게 과실이 있건 없건 즉시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설사 수사 결과 교통사고 자체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도주해 버리면 수사상 과실이 많은 것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고, 일단 도주 차량의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징역 1년이상 사형까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 신고의무

교통사고의 내용이 인적피해이건 물적피해이건 간에 전술한 구호조치가 끝난 다음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설사 피해

자가 신고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된다.

- 교통사고 관계자의 과실유무나 정도는 사고후 신속히 이루어지는 경찰의 현장조사에서 거의 결정 된다고 하여도 파언이 아니다. 따라서 관계자는 최초의 현장 조사시에 사고 경위가 잘못 조사되지 않도록 빨리 냉정을 되찾고 사고당시의 상황을 분명히 할 것이며, 목격증인도 확보 하는 것이 좋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해설

○ 특례법의 제정이유

교통사고는 피해가 중하기 때문에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강제할 목적으로 매우 엄벌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 일부 나쁜 피해자는 가해자의 과실이 매우 적고 자신의 피해가 대단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보상을 받아내고자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탄원하는 좋지 못한 현상도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책을 강구하면서과 실범인 교통사고법의 형사처벌을 완화하고자 이법이 제정된 것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1심판결 선고전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처벌

받는다. 따라서 가해자는 신속한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게 되었다

-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액 보상하므로 합의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 그러나 사고자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는 다음의 경우는 합의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한다.
 -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2)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이른 바 뺑소니의 경우)
 - (3) 신호나 표지를 위반한 경우
 - (4)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 (5) 제한시속을 20km이상 초과한 경우
 - (6) 앞지르기의 방법 또는 금지에 위반한 경우
 - (7) 전 널목 통파방법을 위반한 경우
 - (8)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 (9)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 (10)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한 경우

3. 자동차 보험제도

○ 강제보험 즉 책임보험의 경우

- (1) 강제보험은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 사망의 경우에는 200만 원, 다친 경우에는 최고 120만원까지, 후

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최고 200만원까지의 보험금액을 장해 급수에 따라 지급한다.

(2) 교통사고 피해자는 위 금액의 범위내에서 직접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액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는데, 장례비 등 급하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 가불지급청구서 ; 사고증명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지체없이 가불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3) 피해자는 (1)항 기재금액 범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실제의 손해금액이 그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가해자 측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 임의 보험 즉 종합보험의 경우

(1)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위 책임보험 만으로는 보상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임의로 종합보험에 들어두면 좋다. 즉 책임보험은 인적사고의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범위를 한도로 하고 있고 물적손해에 대하여는 전혀 배상하지 않지만 종합보험에 들면 거의 모든 손해를 보험회사가 배상을 해주기 때문이다.

(2) 종합보험에 든 경우라도 약관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면책조항

이 있는데 그중 중요한 것은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이다.

이 경우에는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없다.

(3) 그리고 임의보험은 약관의 일반조항에 의하여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없이 지급한 손해배상의 전부 또는 일부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를 할 때에는 보험회사와 상의하여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서 사정한 금액 이상을 청구할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보험회사와 상의하여 피해자 측이 소송을 제기함을 기다려 법원의 공정한 판결에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는 것이 좋은데 변호사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을 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 자동차보험과 피해자

위에서 설명한대로 책임보험의 경우는 배상이 일정금액 한도에 그쳐 충분치 못하고, 종합보험은 배상의 폭이 넓고 또 종합보험 보통약관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상식

○ 미군용 차량에 치인 경우

미군용 차량의 운전사인 미군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우리나라와 미국간에 체결된 행정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 피해보상을 해준다. 따라서 피해자는 전국 각 지방 검찰청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각 지구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배상심의회에서 결정된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에 소송을 내기 전에 반드시 배상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 군용차에 치인 경우

이 경우에는 편의에 따라 사고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군부대 지구배상심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배상절차는 국가배상제도의 설명과 같다.

○ 차량관리 소홀 책임

예컨대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열쇠를 허술하게 보관하여 다른 사람이 무단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 차주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차주가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진다는 것

은 아니다.

○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에 사고에 대한 책임

자동차를 팔았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록명의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동안 사고가 났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기 전에 자동차를 인수해 간 매수인이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매도인도 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매도인이 잔금을 받은 후 명의이전서류까지 모두 전해 주었으나 단지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채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요컨대 자동차의 운행을 누가 지배하고 있으나, 운행의 이익을 누가 보고 있느냐가 책임의 소재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겠다.

○ 차주 등의 손해배상 책임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 운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데, 차량의 소유자도 배상책임을 지는지를 묻는 사람이 많다. 당연히 차주등은 운전사가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운전사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차주 등이 운전사의 과실이나 자기

의 과실없이 일어난 사고이며 운전사 이외의 제 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고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차주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겠지만, 보통 이와 같은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차주 등은 거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 개문(開門) 발차는 안내양, 운전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승객의 안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승강구의 문을 닫지 않은 채 발차 신호를 하여 승객이 다친 경우 안내양은 물론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져야하며, 버스운전사도 안내양의 발차신호만 듣고 승강구를 주시하지 않은 채 출발하였다면 역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 육교 밑에서 일어난 사고

육교가 있는 곳에서는 운전사로서는 사람들이 육교로 다닐 것을 믿고 운전한다고 보아야하므로 육교밑을 무단횡단하다가 일어난 사고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고속도로상으로는 사람이 건너지 않을 것을 믿고 운전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다친 사고는 운전사의 책임을 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다.

○ 위자료란 무엇인가

위자료란 피해자 등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액을 말하는데 이는 성질상 주관적 사정,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력, 사회적 지위에 따라 동일하지 않으므로 결국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상속되며,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는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는 그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

○ 과실상계란 무엇인가

사고발생에 있어서나 또는 피해의 증대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를 배상받도록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므로 피해자의 잘못의 정도만큼 배상액을 감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한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가해자측에서 증거를 대야 하지만 결국 얼마의 비율로 피해자의 잘못을 인정할 것인가는 법원이 정하게 될 것이다.

○ 배상금 합의요령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송을 하기 전에 서로 원

만히 합의를 하면 양측에 서로 유리한 점이 있다
즉 피해자는 소송비용이 들지 않고 신속히 배상을
받게 되고 가해자도 형사사건에 있어 유리한 조건이
되고 또 소송에 이르게 되면 합의금 보다 고액의 배
상금을 물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서
로 웃는 낮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 (1)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문명을 하
는등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
- (2) 서로 이성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 감정대립
을 피하여야 한다. 보통 피해자의 경우는 흥
분하기 쉬우므로 이점을 가해자는 이해하여
야 할 것이다.
특히 사망한 사고의 경우에는 유족의 감정을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다.
- (3)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정도, 범위, 과실
정도등에 대하여 굳이 변호사가 아니라도 법
률에 밝은 사람과 상의하여 정확한 자료를
서로간에 준비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서로
간에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 (4) 합의를 보는 경우에 간혹 브로커가 개입하는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과연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적절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계속 대
화와 타협을 하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선
이 나타날 것이므로 그 기회를 잘 포착하여
야 한다. 그리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반
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함은 당연한 일
이다.

호적제도에 관한 법률상식

1. 호적이라 함은

국가가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
놓고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서 누구나
수수료만내면 호적부를 열람하거나, 등본교부를
받을 수 있다.

2. 호적사무처리 기관

호적사무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
창이 관장하고 있으며, 해외국민에 대하여는 재
외공관장인 대사, 공사, 영사가 처리한다.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본적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인 가(家) 단위로 편제되고,
본적의지번 순서에 따라 묶어서 호적부를 만들
어 보존하고 있다.

3. 호주와 호주상속

가(家)의 기준이 되는 지위가 호주이다.

집안의 직계 장남자로 가계가 이어지는 것이 한국 고래의 전통이므로 직계 장남자는 분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4. 입적과 제적

호적의 가(家)에 가족(家族)으로 들어가는 것이 입적이고, 말소되는 것이 제적이다. 입적에는 출생, 혼인, 입양, 인지 등의 사유가 있고 제적에는 이혼, 분가, 호주상속 등의 사유가 있다.

5. 제적과 제적부

장남아닌 남자가 혼인하면 분가하여 스스로 호주가 되면서 독립한 호적을 갖는다. 또 여자가 혼인하면 남자의 호적에 입적이 되고, 호주가 사망하면 장남자가 호주상속을 하게된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원래의 호적에서 모두 말소를하게 되는데 이것이 제적이다. 제적중에서 호주상속이 되거나 호주가 사망하였는데 후손이 없거나 등의 사유로 동일 호적내에 있던 전원이 말소가 된 경우에는 그 호적은 제적부로 편철되어 따로 보존하므로 먼 조상의 신분관계를 알고 싶으면 제적부를 보아야 한다.

6. 신고

- 입적과 제적은 신고에 의하여 하게된다. 신고는 신고하는 사람의 본적이나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서 해야한다. 다만 호주상속 신고는 피상속인의 본적지에서, 혼인신고는 남자의 본적지, 주소지 현재지에서, 태아 인지신고는 인지자의 본적지에서만 가능하다. 또 출생과 사망의 신고는 각 출생지, 사망지에서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추민등록이 되어있는동을 경유해야 한다.

- 신고방식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양식이 있으며 신고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서류도 다양하므로 담당공무원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구두로도 신고할 수 있고 대리인이 신고할 수도 있으며, 신고서를 우편으로 송부해도 된다

- 사망신고나 출생신고 등은 보통 이미 발생된 일을 국가기관에 알려서 호적이란 장부를 정리하는 결과가 된다. 이럴때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사무에도 지장이 많으므로 1개월 동안의 신고의무 기간을 두고있고 이를 넘기면 4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허위신고의

경우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러나 혼인신고, 이혼신고, 입양신고, 인지신고, 폐가신고, 복적신고, 입적신고, 일가창립신고, 전적신고, 분가신고 등은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법률적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혼인은 신고를 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결혼식을 한다고 하여 발생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도 이혼의 합의나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고하여 제적이 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7. 호적관계의 몇 가지 법률상식

(1) 사생아 (혼인외의 자) 의 호적취득

혼인중에 출생한 아이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된다. 그러나 사생아는 아버지가 인지신고나 출생신고를 아니하면 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갈수 없고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어머니가 혼인을 하는 등의 사유로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수도 없을 때에는 출생신고에 의하여 일가창립을 하게 된다.

(2) 동성동본간의 혼인

동성동본간에는 원칙으로 혼인할 수 없으므로 혼인신고도 받아주지 않는다. 잘못하여 혼

인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도 남녀가 8촌이내 이면 무효혼이고 그외의 경우는 당사자나 친척등이 취소청구를 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취소되지 않고 있던 중에 아이를 출생하면 취소할 수가없게된다. 그러나 시조를 달리하는 동성동본간에는 혼인신고서 “기타”란에 “시조를 달리한다”는 취지를 적고 족보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면 혼인할 수 있다.

(3) 친생자의 인지

사생아는 아버지가 스스로 자기 아들임을 인정하여 신고하면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이된다.

그러나 아버지가 인지를 해주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심판청구를 하여 재판으로 인지를 받을 수가 있다.

(4) 무적자의 혼인신고

입적될 호적이 있는 데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경위를 알수 없는 경우에 무적자가 된다. 무적자도 혼인신고나 이혼신고는 할 수가있고, 신고로 혼인이나 이혼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지만 호적이 없기 때문에 특종신고 서류 편철장에 이를 기재해 두었다가 나중에 무적자가 일가창립등으로 호적을 취득한 후에 기재를 하게된다.

(5) 개명과 호적정정

호적정정은 호적의 기재내용이 착오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를 때 이를 고쳐 사실과 같게 맞추는 것이다. 본적지의 동 이름이 틀렸던지 하는 경미한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으나 보다 중요한 사항은 법원에 호적정정허가를 신청하여 정정결정을 받거나 또는 판결을 받아야 할 때도 있다. 따라서 착오로 성명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호적정정의 절차에 의하여 이름을 바로 고칠 수가 있다. 그러나 본래의 이름을 바꾸는 개명의 경우에는 본적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하여 결정이 나면 신고를 하여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이다.

(서울 본원 관할구역 이외에는 각지방 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

(6) 외국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 사이에 출생한 자의 입적

한국여자가 외국 남자와 유효한 혼인을 하여 출생한 자식은 당연히 아버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고 설사 외국국적이 취득되지 아니하더라도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될 수가 없다.

(7) 양자의 상속권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 양쪽의 재산을 모두 상속할 권리가 있다. 다만 양부와 동성동본

이 아닌 양자는 호주상속은 할 수 없다.

(8) 귀화 외국인의 성과 본

외국인이 귀화하거나 혼인하여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쓸 수 있으나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나라식의 성과 본을 쓸 수도 있다.

(9) 출생신고의 첨부서류

신고서 외에 의사나 조산원의 출생증명서를 발부해야 한다. 단 의사등의 증명서를 발부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출생을 증명할만한 적당한 서면이 있으면 된다.

(10)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자

혼인중에 출생한 아이는 부·모 중 누구나 신고 할 수 있다.

상 담 내 용

변호사의 보수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민사의 경우 전심급에 이익가액의 40% 초과 못해

[문] 저는 작년에 4.5t 트럭을 운전하고 고속도로로 구미를 지나던 중, 갑이 트럭(8t)으로 뒤에서 추돌하여 갈비뼈와 척추를 다쳐 병원에서 6개월간 입원치료를 했으나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인을 선임해서 가해차량 소속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재판이 끝날 단계에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때 승소가의 35%를 수수료로 지불키로 했는데 법률상 변호사가 몇%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변호사보수기준에 의하면,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차수금과 성공보수의 합산액은 전심급을 통하여 이익가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친의 채무 변제의무는 아무런 변제책임없습니다

[문] 저희 아버지는 모범운전기사로 택시운전을 하다가 휘발류절약기를 개발하여 운전을 그만 두고 개발에만 몰두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5백만원의 부채를 지고 상심하시다가 고혈암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 중인데 중태이십니다.

저는 (여·26세) 모중학교 서무실에 근무하고 있

웁니다. 채권자들이 저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저는 능력도 없지만 제가 갚아야 하는지요?

[답] 귀하는 하등의 책임이 없습니다.

물론 안된 일이지만 귀하의 부친이 별세하는 경우 귀하는 재산상속인으로서 그 채무도 인수되는 것이기는 하나 상속재산은 없고 부채만 있다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을 포기하면 부모의 채무도 인수되지 아니함을 부연합니다.

부재자의 호적정리 방법은 실종선고청구 법원에 내야

[문] 본인의 형(52세)은 6·25 사변 때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호적정리가 되지 않아 생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종선고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청구방법과 구비서류를 알려주십시오.

[답] 실종선고청구는 부재자(귀하의 형)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법률해석상 민법제27조 소정의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6·25 사변 당시 납북된 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호적등본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인우보증서 1통

4. 부재자증명서 1통

(적십자사에 신고했을 때는 그 증명)

행방감춘자의 가구물처리 어떻게 하나

귀하의 재산과 동일하게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문] 저는 갑에게 방하나를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3만원씩 받기로 하고 삼월세를 주었는데 몇개월 거주하다가 갑이 이사를 가겠다고 해서 보증금을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제3자에게 채무가 있어 빚독촉을 받자 이삿짐을 그대로 두고 가족과 함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저희 집에 갑의 짐이 그대로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답] 귀하는 갑의 물건에 대하여 귀하의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써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그 보관방법은 창고기탁등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후일 귀하는 갑으로부터 보관에 소요된 비용등을 상환 받을 수 있으며 그 상환 받기까지는 갑의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를 간통죄로 고소하려는데 이혼소송내고 고소하도록…

[문] 사업관계로 장기간 집을 비우는 일이 자주

있는데 언제부터 인지 저의 아내가 부정한 남성관계를 맷고 있는 것을 알았읍니다. 몇 번 타일렀지만 계속 탈선을 되풀이하므로 간통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읍니까?

[답] 먼저 귀하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통한 사실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잡아둔 다음 가정법원에 부부간의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를 하면 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점에서 친고죄가 아닌 다른 일반범죄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행방불명된 남편과의 이혼은 남편상대로 이혼소송제기를

[문] 저의 남편은 5년전인 77년 6월 20일 무단 가출한 뒤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답] 「부부는 남편의 주소나 거소에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함(민법 제 826조)」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행방불명중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에 해당되므로(민법 제 840 조 6호) 이를 이유로 귀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 담보로 돈을 대출해도 되나…

전세계약서는 담보가치가 전연 없읍니다

[문] 같은 A점포에 9백만원의 전세를 얻어 문방구를 경영하고 있는데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저에게 3백만원을 차용해 달라고 합니다.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답] 전세계약서 그 자체로는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읍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현실적으로 양도 받아 놓고서 돈을 꾸어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한 경우 전세명의자를 돈을 꾸어주려는 사람 명의로 정정하는 것인데 이에는 건물주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위와같은 복잡한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므로 전세계약서만을 믿고 돈을 꾸어주는 일 같은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없읍니다.

은행신용카드의 보증인의 변제책임은…

보증인으로서의 은행에 대한 변제의무 있읍니다

[문] 본인의 친구인 이씨(회사원)가 신용카드

(은행용)를 발행하고자함에 있어 본인이 보증, 서명 날인해 주었읍니다.

그런데 이씨는 신용카드 개설 후 1년만에 2백30만원의 부도를 내고 은행측에서는 이씨의 봉급을 압류하여 일부 회수했으나 미수금 1백70만원은 본인의 봉급중에서 매달 50%씩을 강제집행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보면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이씨는 다른 형사문제로 고소를 당해 행방을 감추었고 재산도 없읍니다.

[답] 어찌할 도리가 없읍니다. 귀하는 이씨의 보증인으로서 은행에 대하여 이씨의 체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읍니다.

귀하는 이씨의 행방과 재산을 찾아 이씨에게 구상하는 수 밖에 없읍니다.

처벌전의 죄과 또 처벌되나 상습범은 재처벌 받지않아

[문] 본인의 조카(남·17세)는 83년도에 대구에서 절도혐의로 수배된 바 있었는데, 이번에 또 서울에서 절도를 하다가 붙잡혀 구속기소되어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자위탁신청으로 나왔읍니다.

그런데 그후 전에 대구에서 수배되었던 사건으로 현재 대구경찰서에 붙잡혀 있는데 또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요?

[답] 물론 또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

가정법원에서의 보호처분이 위의 죄를 포함한 상습절도사건이었다면 다시 처벌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겠지만 그렇지는 아니 할 것입니다.

70세의 노인에 폭행당했는데 치료비는 청구소송을 내야

[문] 본인의 아버지(70세)는 뚝섬 경마장에서 화투놀이를 하다가, 다른 노인과 말다툼이 벌어져 그 노인으로부터 얼어 맞고 떠밀려 넘어져 엉덩이뼈를 다치셨는데 병원의 진단결과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가해자(75세)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불구속으로 조사만 했읍니다.

경찰은 왜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는지요?

그리고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했더니 못물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① 가해자가 70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점에서 구속조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②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읍니다. 치료비 등 배상청구액이 2백만 원 미만일 때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나가시어 간단히 구술제소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제도를 이용하시도록 하십시오.

처자있는 남자와 깊은 관계 맺었는데 …

결혼빙자간음죄 · 사기죄로 고소, 엄히 다스리십시오

[문] 본인은 수개월 전에 장씨를 알게되어 사귀어 왔는데 그는 얼마전까지 공장을 경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그만두었으며, 사귀는 동안 사업자금에 필요하다고해서 1백 80만원을 꾸어 주었읍니다.

장씨는 총각이라면서 결혼을 하자고 하기 때문에 총각으로 믿고 육체관계까지 맺어 임신중인데, 제가 결혼을 할려면 부모님을 만나자고 하니까 평체를 대는 것이 의심스러워 그의 집을 찾아가서 확인한 바 부모님과 처자식이 있읍니다.

저는 그순간 머리가 아찔했읍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를 고소할 수 있는지요?

[답] 처자식까지 있는 사람이 결혼을 빙자, 유혹하여 육체관계까지 맺었다면 형법상 결혼빙자의 간음죄가 성립함은 물론, 금전까지 꾸어갔다는 것인 즉 이는 명백히 사기죄도 성립합니다.

귀하는 장씨를 상대로 결혼빙자간음 및 사기고소를 제기하여 엄히 조치하십시오.

14년간 가정부생활 급료 못받고 있는데

당연히 받을수 있어…임금지급청구 소송내십시오.

[문] 저는 71년 12월부터 갑의 집에 매월 8천원

씩 받기로 하고 가정부로 들어가서 14년간 일을 했습니다.

몇년이 지난 후에 급료의 지급을 요청했으나 나중에 한꺼번에 목돈으로 가져라가면서 지불을 미루었습니다.

저는 79년 순천향병원에서 자궁암 수술을 받았는데 치료비는 갑이 지불했읍니다.

3년전에는 제가 월급을 달라고 하니까 갑은 2백 만원을 주어서 받았는데 나머지는 치료비로 다 들어가 줄 돈이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읍니다.

저는 85년 2월에 갑의 집에서 나왔는데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귀하는 밀린 급료를 당연히 받을 수 있읍니다. 다만 치료비로 갑이 지불한 것은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는 갑과 타협이 되지 않을 경우 임금지급청구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휴업급여 지불치 않는데 임금의 60% 받을 수 있다

[문] 저는 모전설회사소속 중장비운전기사로 사우디 공장현장에서 근무중 84년 4월 말 중장비전복으로 부상을 당했읍니다.

현지병원에서 방광수술과 1개월간의 치료를 받은

후 귀국, 입원한바 2개월의 입원치료후 2개월의 요양기간을 거쳐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진단이였읍니다.

그런데 2개월간 요양기간 중에는 휴업급여를 회사에서 지불해야 되는데 지급치않고 있으니 받을 수 없는지요?

[답]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부상을 당하여 치료할 경우, 휴양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본연맹에서는 위 사건에 대하여 사실 조사 결과, 담당 갑 의사는 2개월간 휴양을 요한다고 진단했으나 병원 원무과에서 잘못하여 을의사 명의로 치료종결보고서를 통보하였음이 확인되어 이를 회사에 시정토록 하고 최씨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토록 조처하였음)

호적상의 나이를 고칠수있나 관할법원에 허가신청내야...

[문] 저의 실제 나이는 26세인데 잘못되어 호적상에는 29세로 되어있읍니다. 호적상의 연령을 정정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 잘못된 연령은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본적지 관할법원에 연령정정 허가신청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① 호적정정허가서 1통, ② 호적등본 1통,

③ 주민등록등본 1통, ④ 연령감정서 1통 (치과병원에서 발행하는 것이 좋음), ⑤ 인우보증서 1통 ⑥ 병원에서 출생했다면 출생일지

침(鍼)을 잘못 놔서 사람이 죽었는데…

사망결과에 대하여 책임지고 합의약정대로 이행해야

[문] 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집에서 침구(鍼灸)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김만식씨의 어머니(76세)가 병환이 나침을 놓아 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재차 요청하는 바람에 침을 놓고, 쑥으로 뜸을 떴는데 그만 사망했읍니다.

김씨는 저에게 책임추궁을 하면서 1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을 5백만원에 합의하기로 하여 3백만원은 빚을 얻어 지불했으나 나머지는 마련할 길이 없읍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 귀하의 처지는 참 딱하게 되었읍니다.

할머니의 사망원인이 귀하가 침을 놓고 쑥 뜸질한 것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가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던 귀하는 일용 위 사망결과에 대하여 합의약정을 했다는 것은 즉, 그 사망원인이야 어떻던 그 합의약정금을 지급할 의무는 면치 못합니다.

폭행당해 입은 상처, 치료비 청구방법은

공소후 「배상명령신청」등으로 보상받도록

〔문〕 저는 영등포에 있는 모전자오락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을씨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저를 때려 10 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고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치료하는데 들은 12 만의 비용을 받을 수 있지요?

〔답〕 가해자 을씨가 형사입건되어 소송제기되면 이 사건 관할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을씨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손해배상의 소액심판청구(2백만원 이하)」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내면허로 운전 불가한가 국제면허만이 국내운전 가능

〔문〕 저는 미국시민권자로서 미국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1년전 한국에 와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탄 김모씨와 충돌, 김씨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찰의 조사를 받고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어 벌금 50 만원이 나와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항소했지만 역시 기각되어 상고했읍니다 저는 구제받을 수 없는지요?

〔답〕 귀하의 경우 「국제자동차운전면허증」이 아

닌 미국의 「국내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한국에 왔다면, 의당히 한국면허증으로 간신하고 운전을 했어야 하였습니다.

결국 귀하는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어 벌금을 납부하는 수 밖에 없읍니다.

주택임대기간전 보증금환불 임대차계약 일방적해약 안돼

〔문〕 저는 방이 떨린 점포 하나를 보증금 3백만 원에 월세 17 만원씩을 내기로 하고 임차하여 5개월 동안 영업을 했으나 부진하여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했더니 다른 사람을 들이고 보증금을 빼 가지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입주할 사람이 없어서 계약기간은 남았지만 그냥 나오려고 하는데, 만일 점포를 비워주면 그때부터 월세를 안내도 되는지요?

〔답〕 임대차기간은 임대인의 이익을 위한 기간이기도 하므로 귀하는 임대기간 종료전에 영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입니다.

다만 귀하는 임대기간 종료시까지의 소정임료를 지급하고 점포를 명도하여 비로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수 밖에 없읍니다.

「명의신탁」 등기반환불용 경우 소유권 이전청구소송내야

〔문〕 저의 어머니는 식당등을 경영하면서 어렵게 모은돈으로 1천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하였읍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정모씨와 동거하면서 이집을 의부인 정씨의 명의로 등기를 해 놓았읍니다.

어머니가 이집의 등기를 넘겨 달라고 하니까 의부 정씨는 집을 팔고 헤어지자고 하는데 헤어질경우 등기를 이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답〕 귀하의 어머니는 문제된 가옥을 의부인 정씨에게 명의신탁을 한것이므로 정씨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법원에 제소하여 가옥을 도로 찾을 수 있읍니다.

남편과 헤어져 이혼소송 하고싶은데…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 할 수 있읍니다

〔문〕 저는 친척오빠의 중매로 재일동포의 갑씨와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갑씨의 본적지인 전남)를 하였는데, 갑씨는 결혼식이 끝난후 일본으로 먼저 간 뒤, 저와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같이 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럴경우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귀댁의 경우 갑씨를 상대로 갑씨의 본적지 판할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응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읍니다.

폭행사실 없는데 벌금예납고지서 발부돼

검찰에 출두 「억울한 사실」 밝힐 수 있읍니다

〔문〕 저는 서대문구 소재 「ㄱ」여행사 정비사로 근무 중, 세차를 하다가 자루달린 솔을 언땅에 내려놓는 순간 이것이 굴러가 갑(운전사)의 발뒤꿈치에 부딪쳤는데 갑은 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상해 진단서(2주)를 첨부, 고소했는데 검찰로부터 저에게 벌금 30만원의 예납통지서가 나왔읍니다. 제가 폭행하지 않았다는 증인도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답〕 벌금예납통지서는 검사가 법원에 약식재판청구를 하기 전에 이르는 관례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귀하는 검찰에 출두하여 억울한 사정을 밝힐 수도 있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에 처해 진다면 귀하는 위 약식명령을 받는 즉시 7일이내에 판할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어 날 수 있읍니다.

자동차교습중 사고배상책임 학원에 배상책임 있습니다

[문] 저는(운전면허증 소지) 모자동차학원에 운전교육수강생으로 등록을 하고 이어 학원 차량으로 시내연수교육(옆 좌석에 교판 동승)을 받다가 다른 차와 부딪쳐서 차체가 약간 손상 되었읍니다. 차량수리비용이 약 80만원 나왔는데 학원측에서 저에게 수리비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제가 부담해야 되는지요?

[답] 귀하는 운전교판의 지휘감독아래 운전기술의 수업을 받던 중 접촉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차량에 손해를 가하게 된 것이므로 위 손해는 마땅히 자동차학원에서 부담할 책임이며, 귀하는 그 책임이 없습니다.

학원측에서 부담하고 원인책임자에 구상하는 경우에도 당해 운전교판이 그 구상에 응할 책임이 있을 뿐, 그 경우에도 귀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혼인외의자 입적 어떻게 하나 처와 타협, 출생신고하도록

[문] 저는 박모여인과 사실혼관계에서 아들(3세)를 낳았으나 박여인과는 헤어지고, 아들은 박여인이 데리고 다른남자와 혼인했으며, 저는 다시 이모여인과 결혼, 혼인신고를 하였읍니다.

제가 박모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데려다 저의 호적에 입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 귀하의 호적에 출생신고로서 입적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출생신고시 모를 생모로 할 것인가, 또는 처인 이모씨로 할 것인가는 귀하와 이씨가 잘 타협하여서 하십시오.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은 어떻게 하나

계약해제권 인정시 해약금은 2배로

[문] 저는 86년 3월 10일 갑소유의 가옥을 1천 5백만원에 구입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 계약금 1백 50만원을 지불하고 중도금(5백 50만원) 지급일은 15일후로 하였읍니다.

그런데 중도금지급일이 되자 건물주 갑은 계약금 1백 50만원과 위약금조로 50만원을 가지고 와서 해약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계약내용대로 이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 통상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당사자에 계약해제권을 유보한 규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귀하의 설문대로 귀하가 계약금을 지급할 것이라면 반드시 귀하의 계약서에 위와 같은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의 배액인 3백만원

(계약조항에 의거)을 받고 계약을 해제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월급 15만원을 못받고 있는데 관할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문] 저는 82년말 이모 여인이 경영하는 모다방(잠실소재)에 들어가 6개월동안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83년 3월에 그만 두었는데 급료중 15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받지못하고 있는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임금이나 대여금등 채권액이 2백만원 미만일 때에는 소액심판제도라는 간편한 채판절차를 통하여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수령할 급료가 15만원이므로 위 다방경영주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여 받지못하고 있는 급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법으로 등기해간 토지 찾을 수 있나…

원인무효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내야

[문] 1. 저의 외조부 소유의 미등기토지를 제3자인 갑에게 관리를 부탁, 어머니명의로 등기해 줄 것을 당부했으나 갑이 자기 명의로 등기하여 올에게 팔고, 일부만 어머니명의로 등기 이전을 해주었읍니다.

올이 갑으로부터 매수한지 11년이 되었는데, 갑이 매도한 토지를 찾을 수 없는지요?

2. 저의 어머니 선친의 소유토지(미등기)를 제3자 병이 미등기를 복구, 자기명의로 등기한 뒤 다른 사람(J)에게 팔아넘기고 임종하였는데 현지주(J)가 소유한지 16년이나 됩니다.

이 토지를 저희가 찾을 수 없는지요? 찾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요?

[답] 1. 귀하의 모친이 유일한 상속자라면 귀하의 모친이 위토지에 대한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토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비록 현재의 등기명의인의 소유년한이 11년이 되었다하더라도 그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운명에 있는 것이 등기법리입니다.

2. 이 질문 역시 위 1항과 같은 뜻으로 풀이 됩니다. 불법등기를 하고 임종을 한 제3자의 상속인들과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소송으로써 문제의 토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문제된 토지의 법정식가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정확한 비용은 위 싯가를 안 다음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당한 계약서의 효력문제는 계약서상의 의무는 이행해야

[문] 저는 모 가전제품회사 지방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회사에서 판매촉진을 한다는 구실로 사전 합의도 없이 「캠페인」이라면서 중고품교환판매 및 선물증정을 한다는 신문, TV광고를 합니다. 중고 보상 및 선물대금의 50%를 대리점에 부담시키면서 마치 회사가 50%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광고를 이미 한 뒤에 받아가고 있어 타의에 의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회사의 합의없는 광고행위는 책임의 한계가 어려하여 사후계약서의 효력은 있는지요?

[답] 귀하는 가전제품회사의 지방대리점을 경영한다는 것인 바, 귀하 경영의 위 대리점은 법률상 이른바 독립대리점 계약이라는 것으로 귀하는 회사의 지시 혹은 타인에 대한 법률행위에 하등 책임을 부담할 리 없습니다.

다만 귀하는 회사의 문제된 광고행위 이후 회사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 준모양인데 그러한 경우에는 위계약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귀하는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할 수 밖에 없읍니다. 사후 계약이던 사전 계약이던 간에 계약은 지켜져야 할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름나빠 개명하려고 하는데 호적정정신청을 법원에
내야

[문] 저의 아들은 이름이 나빠서 고치려고 하는데 개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 개명을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법원 (개명희망자가 편리한 대로)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개명사유를 기록해야 되는데 개명사유가 타당해야 하며 (소명자료제출) 막연하게 이름이 나쁘다고해서 이름을 고치겠다는 등의 사유로는 개명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1. 호적등본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호적정정허가 신청서 1통
4. 신원증명서 1통 (연령이 15세 이상일 경우)

큰 잘못 없이 폭행당해 충상입었는데…

폭행을 가한사람 민·형사 제소할 수 있음

[문] 저의 동생은 갑씨의 소유 점포앞에 차를 세운 것 때문에 갑씨와 시비가 벌어져 갑씨로부터 각목으로 머리를 맞아 의식을 잃고 청량리에 있는 성바오로병원에 입원, 1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눈에 이상이 생겨 물체가 둘로 보인답니다.

병원측에서는 6개월 동안 관찰한 후에 정확한 진

단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 귀하는 첫째로 갑씨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둘째로 갑씨에 대한 폭행상해의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응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위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는 병원으로부터 치료비 등 소요비용의 명세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동명이인의 죄인으로 몰려 퇴직당했는데 무혐의증명 발급받아 적정한 조처받아야

[문] 저는 어느 날 퇴근길에 갑자기 경찰에 의해 영문도 모르게 수갑을 채운채 연행돼 2일 밤을 경찰서에 갇혀 있다가 판할검찰청(지방소재) 까지 압송당해 사실조사 결과 혐의 사실이 없어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저의 연행은 저와 동명이인인 갑씨의 변호사 법위반 기소중지사건의 장본인으로 오인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일로해서 직장(관광버스회사)에서는 3일간 무단결근했다고 해고까지 당하는 등 손해가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 귀하의 3일간 결근은 무단결근이 아닙니다.

귀하는 판할검찰청으로부터 위 조사결과에 따른 무혐의 결정등의 증명을 발급받아 귀하의 결근사항이

무단결근이 아님을 밝혀 직장으로부터 적정한 조처를 받도록 하는 외에는 별도리가 없겠습니다.

처가 임대한 전세금 반환책임 남편에게 반환할 의무있다

[문] 저는 해외건설현장에서 취업을 하고 귀국해 보니 저의 명의로 등기된 집의 지하실방 하나를 저의 처가 임의대로 갑씨에게 전세를 놓고 가출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씨가 저의 집을 가압류한 후 저를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제가 이돈을 물어주어야 되는지요?

[답] 귀하는 귀하의 출국부재중에 귀하의 처가 귀하를 갈음하여 귀하의 가옥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귀하는 처의 위 가옥 관리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제반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귀하의 전세금반환의무는 문제된 지하실방의 인도를 먼저 받은 다음에라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든집 경매되어 쫓겨날판 집주인 사기죄 의 죄책못면해

[문] 저는 84년 6월 16일 김모씨의 아파트(17평)

를 500 만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6월 28일 입주했으며, 7월 3일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84년 6월 11일 이 아파트를 매입해서 6월 18일 갑씨에게 근저당설정 (채권최고금액 480 만원) 을 하고 돈을 차용했으나 채무변재를 못하자 갑씨가 이 아파트를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구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 귀하가 김씨와 전세계약을 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에 김씨가 갑씨에게 근저당설정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김씨는 귀하에게 임대하는 즉시 갑씨에게 저당설정한 것은 귀하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전혀 이행할 의사없이 귀하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 혐의도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김씨는 사기죄의 죄책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부하 여직원의 공금횡령 변상하라는데…

감독소홀의 책임은 있으나 변상책임 없어

[문] 저는 모회사 경리과장입니다. 경리과 여직원 갑양이 회사공금 500 만원을 저도 모르게 임의로 썼습니다. 회사측으로부터 책임추궁을 받은 갑양은 보증보험으로부터 200 만원을 인출받아 우선

변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나머지 300 만원에 대하여 저에게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하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라는 각서를 쓰라고 강요해서 억지로 썼습니다. 부하 여직원의 공금유용을 제가 책임을 지고 변상해야 되는 것인지요?

[답] 귀하가 작성했다는 각서의 구체적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몰라 자세한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귀하는 부하 여직원의 횡령착복한 금원을 회사에 변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귀하가 작성한 각서의 취의는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소홀등에 인한 책임을 지겠다는 정도의 의미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중개사말 믿다 전세금날릴판 중개사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문] 저는 공인중개사 갑씨에게 의뢰하여 갑의 중개로 을씨의 방 3개중의 2개를 550 만원에 전세를 들었었습니다. 갑씨가 중개할 때, 을씨는 병씨 (건물소유주) 의 집을 1,000 만원에 전세를 들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몇일 전에 을씨는 행방을 감추었는데 알고보니 을씨는 전세가 아닌 보증금 250 만원에 월세 20 만원씩 내고 있었습니다.

병씨는 저에게 방을 내 놓으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 귀댁은 을씨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을씨가 과연 가옥주 병씨로부터 전세보증금 1,000 만원에 세를 얻어 사는 여부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귀댁은 중개사의 말대로 을씨가 병씨에게 전세보증금 1,000 만원이 있었다면 귀댁의 보증금 550 만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충분히 보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중개사 갑씨는 부동산중개업법 제 17 조의 소개물건의 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아니하고 귀댁에 소개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 19 조에 의거 귀댁의 입은 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읍니다.

중개사 갑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십시오.

해외파견 산재근로자 보상 못받고 있는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문] 저는 모건설회사 잡역부로 「리비아」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을 따라가 작업중 오른손을 다쳤습니다.

저는 83년 11월에 귀국하여 K병원에서 40 일간 입원치료를 하다가 퇴원한 후, 85년 4월까지 통원치료를 하였는데 병원측에서 그 뒤로는 집에서 물리

치료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85년 10월, K병원에 가서 X레이를 찍어 보니 완전치는 않지만 수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1급 재단사인데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쓸 수 없어서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보상해 주겠다고 하면서 저의 환부는 보상규정에 없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귀하의 경우 엄지손가락이 폐쇄되었다는 것 인즉 엄지손가락의 기능상실이 귀하의 재단사로서의 노동능력에 얼마만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귀하는 엄지손가락 폐쇄로써 재단사일을 하지 못한다면 필경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그 배상을 받는 도리 밖에 없읍니다.

교도관에게 폭행당해 부상입었는데 …
폭행한 교도관찾아내 징벌받도록해야

[문] 저의 아들은 모종의 과오를 저지르고 현재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 다른 수형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교도관에게 발각되어 교도관으로부터 심한 매를 맞고 두통등의 증세로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있

옵니다.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선처의 길은 없는지요?

[답] 교도소내라 하더라도 교도관은 수형자에 대하여 폭행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형법상 엄중한 형벌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폭행한 교도관을 찾아내어 엄한 징벌을 받도록 하십시오.

(이 사건은 상담인이 본연맹에 진정해서 본연맹은 이를 법무부에 이첩, 관련자를 문책토록 조치하였음)

은행융자보증에 세금부과돼

부과원인되나 자료내면 면세

[문] 갑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저에게 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해서 토지를 담보로 제공했읍니다.

그런데 갑이 채무변제를 못하자 은행측은 동부동산을 경매처분하였는데 저에게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었읍니다.

이런경우 이 세금을 제가 납부해야 되는지요?

[답] 귀하의 경우 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원인이 됩니다만 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라 야만 동세 부과가 가능한 것이므로 경매처분 된 경우 대체로는 위와 같은 세법상의 양도차액이 발생

할 이치가 없읍니다. 따라서 귀하는 관할 세무서에 문제된 과세대상물건이 경매처분에 의한 것이라서 범소정의 양도차액이 없음을 소명하면 동소득세 부과처분의 위험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차남의 사후양자는 분가안했으므로 양자불능

[문] 호주는 아버지인데 2남이 분가하지 않고 있다가 처만 두고 사망 하였읍니다. 사망한 남편의 사후양자를 하려고 처가 입양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 할 경우 어떻게 됩니다?

[답] 사후양자는 그 집을 계승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2남은 분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집에 있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사후양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설문은 한국호적법률학회 <회장 신초희> 제 공임)

정신질환상태에서 저질러진 범행은… 전문의 감정결과 심신장애사유는 처벌면재돼

[문] 저의 동생은 85, 8중순 술에 취해 남의집에 들어가 장롱문을 열다가 불들려 현재 구치소에 있읍니다.

그런데 동생은 평소에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고 타인이 빤히 보는데 남의 집 담을 넘는 등 정상이 아닌 정신질환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되는지요, 아니면 구제의 길은 있는지요?

[답] 형법 제10조에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동생인 경우 전문의의 정신감정결과 위 형법 조항과 같은 심신장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담당수사관에게 동생의 정신을 감정하여 주도록 요청하여 보시고 그 결과에 대한 법의 결정을 따르십시오.(이 문제는 상담자의 호소에 따라 본 연맹이 관계 수사기관에 정신감정을 의뢰했음)

양녀입적파양 새 호적취적은 파양절차거쳐 일가창립해야

[문] 저는(여·63세)는 북한에서 41년에 결혼, 44년에 딸(현재 42세·미혼)을 낳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해방 되었고 6·25 사변이 났으며 남편은 북한에 있고 저는 딸과 함께 6·25 사변 때 남하 하였습니다.

저는 딸의 출생신고를 할수가 없어서 제3자에게

양녀로 입적시켰는데 이제는 딸의 올바른 호적을 만들어 주고 싶고 저도 미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 귀하의 딸에 관한 문제는 파양절차를 밟아야 되며, 귀댁의 호적에 관한 문제는 남편이 북한에 있다는 것이므로 남편과의 혼인신고는 불가합니다.

귀하의 딸은 양부모와의 협의상의 파양을 하여 호적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파양신고를 하면 파양됩니다.

귀하의 호적관계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길이 없으나 귀하는 가호적을 편제, 일가창립하여 귀하가 호주가 되면서 딸을 귀하의 가호적에 입적시키면 호적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법원의 가압류 봉인임의로 떼면 처벌받나 형법의 공무상비밀표시 무효죄로 처벌돼

[문] 저는 갑씨로부터 받을 금 100만원의 채권이 있으나 갑씨에게 독촉을 해도 갚지 않아 공탁을 하고 갑씨의 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씨는 가압류한 물품의 봉인(딱지)을 임의로 일부를 떼어버리고 그 물품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제가 왜 신고도 하지 않고 옮겼느냐고 했더니 갑씨는 신고를 안할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저는 갑씨의 소행이 패첨하여 처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 갑씨의 소위는 형법 제 140 조의 공무상비밀 표시무효죄에 해당 합니다. 귀하는 갑씨를 상대로 위 죄의 고소를 제기하십시오 그러면 갑씨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과 인권

발행처 국세인권옹호한국연맹 전라남도 본부

연락처 광주시 동구 대인동 320-12

<전화> 523-6182

발행일 1986. 11.

인쇄처 한글사

<전화> 22-0540

<비매품>